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박대출·박성민·최형두

김정재 · 강민국 · 박정하

유한홍 · 정점식 · 김태호

윤영석 · 신성범 · 이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 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 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2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4.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